1. **유전상담사 규정**
2. **유전상담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**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(이하 학회) “유전상담사”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 의)

유전상담사란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으로 유전상담에 관한 자질과 능력을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의미한다.

제 3 조 (조직 및 기능)

유전상담사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유전상담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를 두고 다음 항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심사 및 제반 업무

제2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, 감독, 채점 등의 제반 업무

제3항 : 유전상담사 연수교육 (이하 연수교육)에 관한 제반 업무

제4항 : 유전상담사 보수교육 (이하 보수교육)에 관한 제반 업무

제 4 조 (자격인정 절차)

제1항 :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, 학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수험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한다.

제2항 : 학회에서는 유전상담사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하며, 교부 시 인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3항 :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조 (자격인정 기준)

제1항 : 의료인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비의료인으로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신 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한다.

제2항 : 기타 사항은 학회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거나 유전상담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.

제 6 조 (시험)

제1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의 방법, 응시 절차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조 (자격인정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)

제1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증 년, 월, 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.

제2항 :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조 (자격상실)

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유전상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항 : 해당 유효기간 내 자격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자

제2항 :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
제3항 : 기타 유전상담사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항 : 자격갱신 규정에 따른 학술교육과 유전상담을 이행하지 않은 자

제5항 : 자격상실 후 재취득은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 통과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
1. **유전상담사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**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(이하 학회)의 유전상담사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상)

연수교육은 유전상담사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료인 및 비의료인을 대상으 로 한다.

제 3 조 (주관)

연수교육은 유전상담 위원장의 감독 하에 대한의학유전학회 주관으로 실시한다.

제 4 조 (연수교육 개최)

연수교육은 매년 1회 개최한다.

제 5 조 (등록비)

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,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6 조 (연수교육 수료증 교부)

유전상담 위원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연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.

제 7 조 (보칙)

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유전상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.

부 칙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
**다.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**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대한의학유전학회 (이하 학회)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 중 유전상담사 자격인 정시험 (이하 자격인정시험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응시자격)

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1항 :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

제2항 : 학회에서 인증한 유전상담 분야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

제3항 : 임상유전학 인증의 지도하에 산전, 소아, 성인, 암 각 분야 별 50례 이상의 유전상담 경험 이 있는 자 (의학유전학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각 분야별 10례 이상의 유전상담 경험이 있는 자)

제4항 : 학회에서 시행하는 유전상담 연수교육을 이수한자 (응시 전 3년 이내)

제5항 (경과규정): 최소 2년 이상 유전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학회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인정되 는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제2조 2항을 면제 받을 수 있음 (2014년~2018년까지만 해당).

제 3 조 (시험과목 및 시험방법)

제1항 : 자격인정시험 과목은 유전상담 전문과목으로 한다.

제2항 : 자격인정시험은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필기 및 구두시험으로 한다.

제 4 조 (시험의 시행 및 공고)

제1항 : 자격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항 :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과목, 시험방법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시험기 일 3개월 전에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사장이 공고한다.

제 5 조 (응시원서)

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항 : 의사면허증 또는 간호사 자격증, 유전상담 분야 대학원 석사 수료증

제2항 :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및 유전상담 경력 확인서 (별지 제 3호) – 유전상담 경력확인서는 제 2조 경과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

제3항 : 유전상담 연수교육 수료증 (별지 제 1호)

제4항 :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)

제5항 : 유전상담 로그북 (산전, 소아, 성인, 암 각 분야 별 50예 이상의 유전상담) (별지 제 6호)

제 6 조 (시험위원의 선출)

제1항 : 유전상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 제, 시험의 채점,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2항 :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7 조 (출제 및 시험실시)

제1항 : 시험문제는 유전상담 위원장의 책임 하에 출제한다.

제2항 : 시험은 유전상담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
제 8 조 (시험문제 및 배점)

제1항 :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의 만점은 도합 200점으로 한다.

제2항 : 각 과목의 배점은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3항: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두시험 응시가 가능하다.

제 9 조 (채점)

채점은 유전상담 위원장의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,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봉합상 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한다.

제 10 조 (합격자 결정)

제1항 :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유전상담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.

제2항 : 합격 결정은 140점 (70%) 이상으로 하며, 실기와 필기 각각에서 70% 이상 취득을 원칙으 로 한다.

제3항 :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전상담사 인증서를 교부한다.

제 11 조 (부정행위자의 처분)

제1항 :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
제2항 :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해당 처분일로부터 2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3항 :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보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유전상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
**라. 유전상담사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**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유전상담사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며 최신지식의 습득을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)

제1항 : 유전상담사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

제2항 :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, 자격갱신 5년 동안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보수교육에 매 년 참석하거나 (총 5 회), 또는 3회 이상 참석하고 유관 학회 연수교육 평점을 30점 이상 취득한 자

제3항 : 상기 제 1, 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유전상담사 자격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.

제 3 조 (자격갱신의 방법)

자격갱신은 서류 전형으로 하며 유전상담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위원장을 통해 이 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.

제 4 조 (서류제출)

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항 : 유전상담사 자격증 사본

제2항 :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유전상담사 보수교육 수료증

제3항 : 유관학회 연수교육 평점표 30점 이상 (필요한 경우에 한함)

제 5 조 (보수교육)

보수교육의 인정 한계는 유전성 암 유전상담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과 유전상담 위원회의 결 정을 준용한다.

6 조 (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 및 자격갱신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)

1. 유전상담사 자격인증 취득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자격갱신 불합격자는 유전상담사 자격을 상실한다.

2. 유전상담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유전상담사 연수교육을 받고 자격인정시험에 응시 및 합격 후 유전상담사 인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 7 조 (보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유전상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
**2. 별지서식**

별지 서식 목록

[별지 제 1 호]

: 유전상담사 연수교육 수료증

[별지 제 2 호]

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

[별지 제 3 호]

: 유전상담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 확인서

[별지 제 4 호]

: 유전상담사 자격갱신 신청서

[별지 제 5 호]

: 유전상담사 보수교육 수료

[별지 제 6 호]

: 유전상담일지 확인서와 유전상담일지